
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(박해철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2689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9. 4.

발 의 자 : 박해철·박균택·박 정
송옥주·권칠승·장종태
조계원·김정호·김동아
임호선·최혁진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배우자가 출산한 이후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출산 전 진료 동행이나 출산 준비, 배우자 돌봄 등 다양한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,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직전에도 활용할 수 있게 하고 기간도 확대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강해지고 있음.

이에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기간을 30일로 하고 이 중 20일은 기존과 같이 유급으로 하며, 배우자 출산휴가 가능 시점을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, 일·가정 양립 및 출산 친화적 사회환경 구축에 이바지하고자 함(안 제18조의2제1항·제3항 및 제6항).
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의2제1항 전단 중 “20일”을 “30일”로 하고, 같은 항 후단 중 “휴가기간은”을 “휴가기간 중 20일은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배우자가”를 “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고, 배우자가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⑥ 배우자 출산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8조의2(배우자 출산휴가)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(이하 “배우자 출산휴가”라 한다)를 고지하는 경우 <u>20일</u> 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. 이 경우 사용한 <u>휴가기간은</u> 유급으로 한다.	제18조의2(배우자 출산휴가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<u>30일</u> ----- -----. --- <u>휴가기간 중 20일은</u> ---- -----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<u>배우자가</u>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.	③ ----- <u>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고, 배우자가</u> -----.
④ · ⑤ (생 략)	④ · ⑤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⑥ <u>배우자 출산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.</u>